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망 이용계약 체결의 부당 거부 및 정당한 대가의 지급 거부 금지 등 >
■ 이해민의원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63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망 이용계약 체결의 부당 거부 및 정당한 대가의 지급 거부 금지 등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	2
2.. 통신망 이용·제공 현황 실태조사	12
3. 벌칙 적용대상에서 제외	1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김우영의원 등 25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8.

다. 회부연월일 : 2024. 8.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망 이용계약 체결의 부당 거부 및 정당한 대가의 지급 거부 금지 등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

망 이용계약 체결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이용계약 체결의 부당 거부 및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안 제50조제1항제1의2 신설 등),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협정 뿐만 아니라 계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u><신설></u>	제50조(금지행위) ① -----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제9호부터----- ----- ----- -----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u>

현행	개정안
2. (생략)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신설>	2. (현행과 같음)
	2의2.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
	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당하
	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보통신
	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신설>	2의3.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
	공에 관한 계약 체결 과정에
	서 이용요금, 계약 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
	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	-----
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	-----
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	-----
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전기통신사업자 간 <u>협정</u> 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4. ----- <u>협정</u> 또는 <u>계약</u> -----
5. ~ 11. (생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 배경

○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소수의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 제공자: 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됨.

-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 국내 일평균 생성 트래픽 양의 약 46.6%를 상위 5개 사업자가 차지하음.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일 평균 트래픽 현황(2020~2023)>

(단위: %)

사업자명	2020	2021	2022	2023
구글(유튜브 등)	25.9	27.1	28.6	30.6
넷플릭스 코리아	4.8	7.2	5.5	6.9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3.2	3.5	4.3	5.1
네이버	1.8	2.1	1.7	2.9
카카오	1.4	1.2	1.1	1.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그 품질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KT, SKB, LGU+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들은 늘어나는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망 용량을 지속적으로 증설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CP에게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특히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와 같은 국내 CP는 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글로벌 CP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CP간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2021년 6월 25일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간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넷플릭스가 ‘SKB의 망에 연결’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 SKB가 넷플릭스에게 “SKB 망에 대한 연결”이라는 의무를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넷플릭스가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대가의 지급은 반드시 금전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그 대가의 범위와 지급 방식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라고 결론 내림.
- 그런데, 2023년 9월 18일 넷플릭스와 SKB는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하였고, 양측은 기밀유지 협약을 체결해 구체적인 비용부담 구조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화해를 통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음.

- 관련하여 2023년 12월 5일 미국 아마존닷컴의 게임스트리밍업체 트위치가 높은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망사용료)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망사용료 논란이 다시 가열된 바 있음.

□ 검토사항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1)에서는 공정한 경쟁 또

-
- 1) 제50조(금지행위)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이른바 ‘금지행위’)를 열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설비등²⁾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제1호), ②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제2호), ③ 그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제6호)가 있음.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안 제50조 제1항제1의2),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제50조제1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부당하게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대하여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설비등”이란 설비와 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임(제35조제1항).

항제2의2),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제50조제1항제2의3) 등을 금지행위로 신설함으로써 소수의 글로벌 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ISP와의 협의에 의한 망이용 대가를 거부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국내외 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이는 ISP-CP 사이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서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한 계약 체결과 대가 지급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사후적인 금지행위 규제를 설정하는 입법 방식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먼저,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당한 이용 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판단요소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 참고로 21대 때 망 이용계약 체결의 부당한 거부 및 정당한 대가의 지급거부 금지 등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317)을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는데, 당시 과방위의 검토보고서에서 ‘정당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한편 안 제52조제1항제4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 간 ‘계약’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 계약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일한 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한미 FTA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국내 CP가 해외진출시 상호주의에 따라 규율받게 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다른 국가 기업에게 한국 소비자가 그 콘텐츠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한국 ISP에게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다면 미국 CP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서 KORUS FTA 제12.2조 및 제11.3조, 14.2조, 15.3조³⁾ 위반이 될 수 있음.

3) [제14.2조]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제15.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 가.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그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 또는
 - 나.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제품

- 나아가 202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망 이용대가 이슈를 재차 지적하면서, 3개 주요 한국 ISP들의 과점 구조상 망 이용대가 납부 의무가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21대 국회 때 운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317호)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역시, “국내 CP가 해외진출 시에 상호주의에 따라 규율받게 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CP들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 다만, 안 제50조제1항2호의2의 경우 망 이용대가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문제가 제기되거나 시장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 제50조제1항 제1의2호 및 제2의2호 조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행위(법 제45조)⁴⁾와 중복되는바, 중복규제가 우려되어 수용하

4)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

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침해 가능성, 한미 FTA의 위반 우려⁵⁾, 국내 CP들의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종합해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망 이용계약 체결의 부당 거부 및 정당한 대가의 거부 금지 등을 통해 국내외 CP간 역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정당한 대가의 구체적 기준 판단의 한계, 미국과의 통상 문제, 국내 CP가 해외진출 시에 상호주의에 따라 규율받게 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임.

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5) 다른 국가 기업에게 한국 소비자가 그 콘텐츠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한국 ISP에게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다면 미국 CP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서 KORUS FTA 제12.2조 및 제11.3조 그리고 14.2조, 15.3조 위반이 될 수 있음

2. 통신망 이용·제공 현황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함(안 제34조의3 신설).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4조제5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이용·제공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이하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

현행	개정안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u>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u>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 8. (생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⑤ ----- ----- -----. ----- ----- ----- -----.
9. ~ 17.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⑥ (생략)	8의2.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u>자료의 제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u>
	9.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사항

- 통신망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행법상 정부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망의 이용·제공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 관련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안 제34조의3이 신설될 경우 정부가 통신망의 이용·제공과 관련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트래픽 전송량 및 경로 등의 정보는 사업자들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동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이용·제공 시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국내 망 이용 및 계약현황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실태조사의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시행⁶⁾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주체를 방통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현재 방통위에서 ISP/CP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현황 점검 중('24.5월~)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중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

3. 벌칙 적용대상에서 제외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는 벌칙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5조 및 안 제99조).

현행	개정안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5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명령(제50조제1항제1호의2·제2호의2·제2호의3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명령은 제외한다)-----
5의2. ~ 7. (생략)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 7. (현행과 같음) 제99조(벌칙) ----- -----제50조제1항제1호의2·제2호의2·제2호의3의 행위, 제50조제1항제5호의----- ----- ----- -----

☐ 검토사항

○ 개정안은 제95조 벌칙과 제99조 벌칙 적용대상에서 안 제50조

제1항제1호의2, 제2호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제외하여,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다고 보임.

○ 특히, 개정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중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라는 용어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21대 때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1519호)은 ‘정당한 이용 대가’라는 용어와 함께 이에 대한 판단요소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정당한 이용 대가’라는 용어 자체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